

2020 1기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2020년 7월 26일(일) 14:00

원격화상회의

진보당 부산시당

회의자료 순서

대의원대회 진행순서.....	2
부산광역시당 대의원 명단.....	3
2020 1기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순 및 안건.....	11

안건자료

보고안건

보고1. 진보당 1기 제1차 중앙위원회 결과 보고.....	12
보고2.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1기 제1차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13
보고3. 당원현황 보고.....	16
보고4. 활동 보고.....	17

심의·의결안건

안건1. 대의원대회 직속기관(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구성의 건.....	19
안건2.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결산 심의의 건.....	20
안건3. 2020년 하반기 사업계획 의결의 건.....	25
안건4. 2020년 하반기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40
안건5. 부산광역시당 규약 개정의 건.....	43

첨부자료

진보당 당규 <제6호> 회의규정.....	46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규약.....	54

대의원대회 진행순서

1) 개회선언

민중당 당규 제 6호<회의 규정>

제4조(의사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재적1/3이상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제6조(성원보고)

-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한다.
-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석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7조(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2) 서기, 감찰 지명

민중당 당규 제 6호<회의 규정>

제41조(의사록의 작성과 보관)

-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 ② 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제44조(의장의 질서유지)

-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감찰을 지명한다. 감찰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3) 회순 확정

민중당 당규 제 6호<회의 규정>

제25조(회순)

- 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 ② 회순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조(안건 상정)

- ①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 ②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4) 안건 심의 (보고안건, 심의·의결안건)

5) 폐회

※ 발언과 의결 방식 등 자세한 회의진행 규정은 46쪽 ~ 53쪽 '당규 제6호 회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당 대의원 명단

번호	이름	직위	비고	출석 여부
1	노정현	부산시당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2	노민현	부산시당 부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3	김은진	부산시당 부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4	임상민	부산노동자진보당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5	윤서영	부산여성-엄마진보당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6	김명신	부산청년진보당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7	정찬수	금정구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8	김재민	동래구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9	김원	부산진구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0	조차리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1	이현정	사하구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2	김준수	서구동구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3	김병국	연제구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4	권혁	중구영도구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5	김태성	해운대구기장군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6	김진주	부산학비현장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7	안수용	부산마트현장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번호	이름	직위	비고	출석여부
18	정대원	부산지하철현장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9	안준용	부산건설현장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시당 대의원	×
20	최종해	선출직 중앙위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21	배지영	선출직 중앙위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22	김철휘	선출직 중앙위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23	정성규	선출직 중앙위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24	이대진	선출직 중앙위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25	이필숙	선출직 중앙위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26	김동윤	선출직 중앙위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27	최성희	선출직 중앙위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28	주우열	선출직 중앙위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29	어용수	선출직 중앙위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30	양미자	선출직 중앙위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31	이태환	선출직 중앙위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32	박정인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33	이은규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34	오문제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35	이정은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36	박지영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37	손영재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번호	이름	직위	비고	출석여부
38	이은봉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39	박오숙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40	김재하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41	김정아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42	김선옥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43	김유란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44	김정권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45	진영식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46	최승환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47	전용기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48	최성훈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49	남육희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50	박진영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51	임미진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52	이필선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53	임상철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54	김상구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55	정경애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56	송용덕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57	최낙숙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번호	이름	직위	비고	출석여부
58	허경식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59	김선양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60	신도선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61	김민정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62	여승철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63	이원경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64	김영미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65	전위봉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66	윤문자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67	김인애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68	권누리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일반당원)	당연직 시당 대의원	○
69	나용무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70	이경태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71	정명화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72	서양수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73	김희정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74	박인환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75	김대현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76	박소연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77	이기윤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번호	이름	직위	비고	출석여부
78	유병국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79	이종희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80	안성현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81	김정미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82	허남호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83	김경락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84	김도숙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85	라영숙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86	여승철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87	김은혜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88	이미경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89	김병준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90	신애숙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91	김혜정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92	성호경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93	소진희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94	박보혜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95	최혜미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96	고윤혜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97	소현진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번호	이름	직위	비고	출석여부
98	최원석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99	윤석현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00	이보람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01	윤제형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02	윤미경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03	최민정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04	주선락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05	이석재	선출직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당연직 시당 대의원	×
106	이인숙	굽은소나무 분회원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07	심문용	현)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삼화지회 부지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08	김은경	현) 민주노총 부산본부 총무국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09	김용준	현) 수레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10	김석훈	현) 미군세군무기실험실철거남구대책위 사무국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11	김순애	부산여성회 공동대표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12	조영은	부산 여성-엄마민중당 정책위원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13	최일성	삶장애일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14	서정남	4.27분회 분회원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15	김미현	부산여성회 부산진지부 사무국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16	백승범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조직부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17	윤재한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조직부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번호	이름	직위	비고	출석여부
118	김태민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총괄조직부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19	박영애	부산여성회 북구지부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20	김충렬	화물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21	김진덕	사상구민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22	김두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특수분과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23	차봉환	전조등분회원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24	안상순	보건의료노조 부산대학교병원지부 교육부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25	안진경	부산여성회 연제지부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26	이보영	부산겨레하나 평화통일교육센터 실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27	박병주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28	김윤정	설렘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29	손수진	희망세상 사무국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30	원경환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31	김영준	청년가치협동조합 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일반당원)	○
132	정승숙	남구수영구위원회 그리다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33	주민성	남구수영구위원회 은자부터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34	강병문	남구수영구위원회 한마음화물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35	배재현	남구수영구위원회 팔도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36	윤경란	동래구위원회 당주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37	전선옥	동래구위원회 자주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번호	이름	직위	비고	출석여부
138	조인정	동래구위원회 스카이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39	오영환	동래구위원회 단디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40	김종민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밝은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41	김선희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소금꽃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42	김종태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봄날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43	김효준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나뽕수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44	김정선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아씨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45	김정희	사하구위원회 꽃길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46	이하근	사하구위원회 정거장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47	이승현	서구동구위원회 심쿵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48	강선자	연제구위원회 새꿈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49	손인곤	연제구위원회 456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50	이승관	중구영도구위원회 친구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51	남태현	해운대구기장군위원회 풍산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52	이정수	해운대구기장군위원회 고리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53	라현영	해운대구기장군위원회 넝쿨째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54	문석구	해운대구기장군위원회 여명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155	박성훈	해운대구기장군위원회 해일분회 분회장	선출직 시당 대의원 (분회장추첨)	×
참석 : ○ 불참 : × 지각 : □ 조퇴 : △ 지각 및 조퇴 : ◇ 사고 : ◎				

제1차 대의원대회 회순 및 안건

순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서기 및 감찰 지명
4. 회순확정

보고 안건

1. 진보당 1기 제1차 중앙위원회 결과 보고
2.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1기 제1차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3. 당원현황 보고
4. 활동 보고

심의·의결 안건

1.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구성의 건
2.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결산 심의의 건
3. 2020년 하반기 사업계획 의결의 건
4. 2020년 하반기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5. 부산광역시당 규약 개정의 건

첨부 - 회의규정, 부산시당 규약

보고

1

진보당 1기 제1차 중앙위원회 결과

■ 1기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일시 : 2020년 7월 19일(일) 14:00

□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

□ 의장단 : 김재연 상임대표(의장) 송명숙 조용신 공동대표(부의장)

□ 강연: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 - 진보당 '전국민고용보험제' 설명

□ 개회 선언 (15:00)

□ 감사패 수여 - 이상규 민중당 2기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전일에게 감사패 수여

□ 성원 보고

- 총원 297명, 사고 3명, 재적인원 294명, 의사정족수 148명, 재석 244명(14:15)

□ 서기·검표위원 지명

- 서기 : 장진숙, 조현실, 김택연, 정해규

- 검표위원: 신용욱, 이용우, 홍기웅 및 시도당 사무처장

□ 회순 통과

- 만장일치로 통과

□ 보고 안건

보고 1. 대표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보고

보고 2. 당무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보고

보고 3. 진일보위원회 보고

- 문서로 보고

보고 4. 재정현황 보고

- 문서로 보고

보고5. 당원 현황 보고

- 문서로 보고

□ 심의·의결 안건

안건1. 인준 및 선출의 건

- 만장일치로 인준 및 선출

안건2. 전국민고용보험 추진계획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안건3. 8.15민족자주대회 추진계획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안건4. 당규 개정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안건5. 계급계층조직 명칭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 폐회 (16:20)

보고

2

진보당 부산시당 1기 제1차 운영위원회 결과

■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1기 1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보고

□ 일시 : 2020년 7월 9일 (목) 19시30분

□ 장소 : 부산시당 교육관

□ 회의참가자

- 위원장단 : 위원장 노정현, 부위원장 임상민·윤서영·김명신·김은진·노민현
- 지역위원회 : 금정구 정찬수, 동래구 김재민, 부산진구 김원, 북구사상구강서구 조차리, 사하구 이현정, 서구동구 김준수, 연제구 김병국, 중구영도구 권혁, 해운대구기장군 김태성
- 계급계층 현장조직 : 마트 안수용, 지하철 정대원
- 상설위원회 : 자주통일위원장 문제열, 기획위원장 장영심
- 위임참석 : 학비현장위
- 참관 : 사무국장 신창주, 언론홍보국장 홍기호, 선전부장 신성호

□ 보고안건

1. 당원현황, 분회실사 결과 : 회의자료 참조
2. 재정현황 : 사무국장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예산안을 보고함. 자료 별도 배부
3. 상근자 운영안 : 생략함.
4. 연대단위 보고 : 회의자료 참조

□ 논의안건

1. 1기 진보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인준의 건
▷ 만장일치로 사무처장을 인준하고 사무처 구성안을 보고함.

2. 상설위원회 설치, 운영의 건

▷ 자주통일위원회, 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을 인준함.

3. 1기 중앙위원회 준비의 건

▷ 의무교육 온라인 이수 방법 없겠는지 의견 제출됨, 적극 제안하기로 함.

4. 부산시당 하반기사업계획 논의의 건

▷ 아래 의견을 취합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하기로 의결함.

○ 분회건설과 관련하여 고민 제출 - 분회건설이 당원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분회건설 수치가 목표로 제출되는것이 고민 (답변 : 당연히 신규분회 건설은 당원들이 성장하는 결과여야 한다. 분회원들을 정치적으로 단련하고 육성되는 목표를 새 분회장으로 세워내는것으로 단위별로 계획을 세워보면 신규분회건설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

- 본보기분회 창조 관련하여 모범창조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가 구체적이어야. ‘시범연구단위’를 선정하고 지도해야 하지 않겠는지 의견 제출됨. (답변 : 해당 내용 사업계획에 추가하기로 함)
- 신입분회장대회 시기와 관련한 의견 제출됨. (평일은 어려울 수 있으니 일요일로) (답변 : 날짜 수정하기로 함)
- 분회대항퀴즈대회는 노동자 골든벨이 있고 기본 조직대상이 분회원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행사가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하반기 총연맹선거가 있어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 (답변 : 퀴즈대회는 내년 상반기에 다른 교재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정하기로 함.)
- 분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는 당생활을 각 분회에서 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역위원회, 현장위원회별로 분회에 속하지 않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반드시 진행해야 함. 신입당원을 입당시키고 새 분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당원들의 당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들어 당원총회 성사를 위해 당원사업을 시작했으나 당원총회에 참여한 당원 모두가 분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
- 교육사업과 관련해서는 분회장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향후에 반영되도록 해야하지 않겠는지 (시당의 일방적인 교육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견.
- 사업계획중 ‘지도체계 혁신안’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답변 : 2기의 교훈은 체계가 사람사업을 하고 체계가 지도하는

- 것이 아니라 누가 지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고 시당이 종합적으로 지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임. 하나의 현장과 지역을 누가 지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지부터 시작해서 지도체계를 새롭게 고민하겠다는 취지임.)
- 분회 보고 기풍 관련 지역위원장들의 고민이 있다. 지역위원회에서 분회보고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사업하자는 취지는 동의 하나 방법은 좀 더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의견. (답변 : 앞으로 조직국의 주요 업무를 분회진행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임. 일정하게 규율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취합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해지므로 제출시한과 형식은 단일해야 함.)
- 지역에서 당원총회를 다들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고민이 있다면 시당차원의 사업계획으로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의견 (답변 : 올해 하반기를 전국민고용보험제 하나로 끝낼것인지 다른 운동이 제기될 것인지 예를 들어 코로나19시대 예산은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주제로 정치대회를 열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적시하기가 어렵다. 올 초에는 하반기 주민대회를 상정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정리하기 어렵다고 본다. 내년 당원총회도 마찬가지로 일괄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는 어렵다. 당원총회가 분회창조의 과정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많은 지역에서 일회성 행사를 하게 된 지난 결과를 봤을때도 당원총회를 치러내는 것이 능사인지 고민이

<p>있음. 당원들의 당생활을 확대하는데에 복 무되도록 지역 현장별로 고민이 필요하다 고 봄.)</p> <p>5. 부산시당 대의원대회, 출범대회 논의의 건 ▷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의원대회 준비 계획을 수정의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대의원대회 -> 2020으로 수정 ○ 보고안건에서 평가전망위 문서 삭제 (사업 계획에 대부분 반영) ○ 출범대회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대의원대 회 사전행사로 축약 진행하기로 함. (출범 	<p>선포 언론사업 별도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기 부산시당 출범대회 -> 진보당 부산시 당 1기 출범대회로 수정 <p>6. 8.15민족자주대회 준비의 건 ▷ 제출된 계획대로 8.15대회를 준비하기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 ▷ 차기 회의는 휴가철을 고려하여 8월 10일 (월) 19:30에 개최하기로 함.
--	---

보고

3

당원 현황 (기준일 : 202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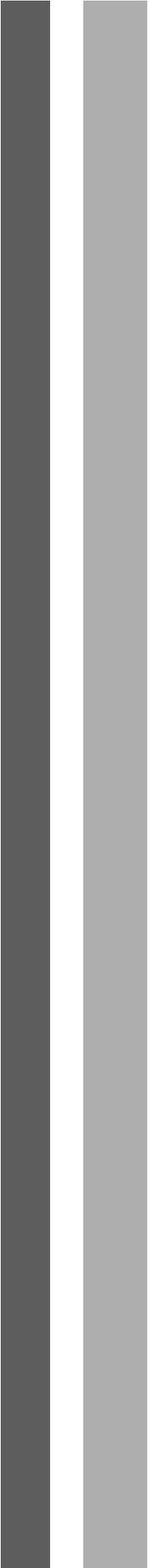
7/1 기준	전체 당원수	구성수	6월당비 납부율	성별당원수		연령별당원수							
				남	여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구분안됨	
지역 의원 회	금정구	348	7%	76%	186	162	52	28	120	126	20	1	1
	남구수영구	513	10%	66%	192	321	28	45	147	240	51	2	0
	동래구	255	5%	69%	52	203	12	20	68	136	15	4	0
	부산진구	1,583	32%	60%	1,270	313	83	150	372	711	256	10	1
	북구사상구강서구	571	12%	70%	113	458	12	47	186	296	26	1	3
	사하구	309	6%	74%	81	228	8	9	102	167	22	1	0
	서구동구	180	4%	61%	64	116	4	24	47	89	15	1	0
	연제구	189	4%	72%	57	132	25	17	63	74	10	0	0
	중구영도구	170	3%	62%	61	109	12	11	39	86	13	9	0
	해운대구기장군	553	11%	66%	171	382	31	58	201	242	16	5	0
	[미분류]	220	4%	57%	163	57	15	36	92	51	18	8	0
합계	4,891	100%	66%	2,410	2,481	282	445	1,437	2,218	462	42	5	
노동 자	건설	1,237	35%	55%	1,181	56	46	92	260	569	261	8	1
	마트	212	6%	70%	11	201	1	10	69	132	0	0	0
	지하철	93	3%	91%	92	1	3	10	65	15	0	0	0
	학비	1,462	41%	63%	27	1,435	2	49	371	953	86	0	1
	노동일반	558	16%	72%	427	131	23	94	205	199	35	0	2
	합계	3,562	100%	63%	1,738	1,824	75	255	970	1,868	382	8	4
여성엄마	222	100%	82%	1	221	1	35	108	72	6	0	0	
청년	205	100%	57%	110	95	170	31	1	3	0	0	0	

보고

4

활동 보고 (보고기간 : 2020.6.21.~2020.7.20.)

일시	행사	장소	주최
6/22 (월) 14시	부산시당 위원장단회의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6/24 (수) 종일	이석기 의원 석방 국민대행진	부산 일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6/27 (월) 18시	1차 부산시민 시국집회	서면태화앞	부산시민 시국회의
7/3 (금) 19시	국보법철폐선전전 (사무처 3명 참석)	서면태화앞	국가보안법철폐부산 공동행동
7/6 (월) 14시	미군폭죽난동 규탄 긴급기자회견 (남구수영구위원회, 청년진보당 당원들 참석)	백운포	부산민중연대
7/7 (화) 11시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부산지방법원	진보당 부산시당
7/7 (화) 13시	남북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부산시민 1만 서명운동 결과발표 기자회견 (사무처장 참석)	부산시청	부산지역 시민단체 시국회의
7/8 (수) 13시	과잉부실수사 검경규탄 긴급기자회견 (사무처장, 청년진보당 당원들 참석)	부산진경찰서	부산민중연대
7/8 (수) 14시	코웨이 총파업투쟁 승리 부산지역 결의대회 (시당위원장 참석)	시청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 코웨이지부
7/9 (목) 13시	“폭죽난동 방역법 무시 주한미군” 즉각 처벌 촉구 기자회견	부산지방경찰 청	진보당 부산시당
7/9 (목) 19:30	부산시당 1차 운영위원회	시당교육관	진보당 부산시당
7/16 (목) 13:30	독립군 때려잡던 악질 친일파 백선엽, 추모가 웬 말이나? (시당위원장 참석)	부산시청 앞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7/17 (금) 19시	국보법철폐선전전 (청년진보당 2명 참석)	서면태화	국가보안법철폐부산 공동행동
7/18 (토) 19시	부산시민원탁회의	원격화상회의	부산 미 세균전부대 추방 시민대책위(준)
7/19 (일) 14시	진보당 1기 제1차 중앙위원회	원격화상회의	진보당



2020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1기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심의 · 의결안건 순서

1.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구성의 건	19
2.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결산 심의의 건	20
3. 2020년 하반기 사업계획 의결의 건	25
4. 2020년 하반기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40
5. 부산시당 규약 개정의 건	43

심 의 · 의 결

1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구성의 건

☞ 안건 주문 사항 : 아래의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구성안을 검토한 후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1기 대의원대회 직속기관>의 위원장 및 위원을 선출해 주십시오.

- 1. 설치 근거 :** 대의원대회 직속기관은 부산시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부산시당 규약 제13조, 14조, 15조)
- 2. 구성 :** 대의원대회 직속기관은 각각 위원장 1인과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당 당규 제 9호 제 4조, 제 10호 제 4조, 제 11호 제 4조)
- 3. 대의원대회 직속기관의 종류**
-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 4.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1기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구성안**

기관명	위원장	위원
윤리위원회	이필숙 (소속 : 사하구위원회, 여성-엄마당)	이석재 (소속 :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노동자당) 김미진 (소속 : 부산진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손인근 (소속 : 연제구위원회)	여승철 (소속 : 중구영도구위원회, 노동자당) 박영애 (소속 :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여성-엄마당)
예산결산위원회	유병국 (소속 : 부산진구위원회, 노동자당)	박진영 (소속 :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임미진 (소속 :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여성-엄마당)

심 의 · 의 결

2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결산 심의의 건

☞ 안건 주문 사항 :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회계 결산 내역과 예산결산위원회의 감사의견서 (별첨)를 심의해주십시오.

민중당 부산시당 2019년 결산							
구분	항	목	세목	내역	예산	19년 집행액	집행율
수입	전월 이월금			이월금	-1,896,916	-1,896,916	
	당비 수입				138,000,000	151,327,499	109.66%
	기타 수입				74,300,004	21,425,429	28.84%
	차입금				17,500,000	57,500,000	328.57%
	수입 총계					227,903,088	228,356,042
지출	기본경비	인건비	활동비	상근자 활동비	138,600,000	136,600,000	98.56%
			인건비 소계		138,600,000	136,600,000	98.56%
		사무소	임대료	임대료 및 관리비	14,520,000	14,520,000	100.00%
			복사기임대료	복사기임대사용료	1,980,000	1,980,000	100.00%
			통신비	전화,인터넷,문자요금	4,200,000	2,149,670	51.18%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전기,수도 및 기타 요금	4,200,000	3,471,291	82.65%	
		비품및소모품비	비품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4,800,000	5,027,520	104.74%	
		각종수수료	각종 수수료	120,000	61,900	51.58%	
		사무소 설치운영비 소계		29,820,000	27,210,381	91.25%	
	기본경비 합계		168,420,000	163,810,381	97.26%		
	정치활동비	조직활동비	연대사업비	연대사업비	6,600,000	7,838,500	118.77%
			출장비	출장비	7,200,000	7,677,380	106.63%
			위원회 사업비	지역 및 계급계층, 상설위원회 사업비	7,740,000	7,200,730	93.03%
			조직사업비	조직사업비	13,200,000	13,372,425	101.31%
			선전비	투쟁 및 시민홍보비	14,400,000	13,700,200	95.14%
여성정치발전비			여성정치발전비	-	-	-	
조직활동비 소계		49,140,000	49,789,235	101.32%			
선거지원금		12,000,000	12,000,000	100.00%			
예비비		4,343,088	-	-			
지출총계		221,903,088	225,599,616	101.67%			
총잔액		6,000,000	2,756,426				

민중당 부산시당 2020년 상반기 결산							
구분	항	목	세목	내역	2020년 예산(안)	상반기집행액	집행율
수입	전월 이월금			이월금	2,756,426	2,756,426	100.00%
	당비 수입				217,200,000	94,659,713	87.16%
	기타 수입				237,545,198	267,042,777	224.84%
	차입금				-	-	-
	수입총계					454,745,198	361,702,490
지출	인건비		활동비	상근자 활동비	191,200,000	80,700,000	84.41%
			인건비 소계		191,200,000	80,700,000	84.41%
	사무소설치운영비		임대료	임대료 및 관리비	14,520,000	7,260,000	100.00%
			복사기임대료	복사기임대사용료	1,980,000	990,000	100.00%
			통신비	전화,인터넷,문자요금	4,200,000	2,335,990	111.24%
			공공요금	전기,수도 및 기타 요금	3,960,000	1,424,414	71.94%
			비품및소모품비	비품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5,040,000	5,402,385	214.38%
			각종수수료	각종 수수료	120,000	43,100	71.83%
			사무소 설치운영비 소계			29,820,000	17,455,889
	기본경비 합계					221,020,000	98,155,889

정치 활동비	조직 활동비	연대사업비	연대사업비	7,800,000	3,335,000	85.51%
		출장비	출장비	7,200,000	2,099,327	58.31%
		위원회 사업비	지역 및 계급계층, 상설위원회 사업비	9,420,000	1,716,960	36.45%
		조직사업비	조직사업비	14,800,000	8,714,500	117.76%
		선전비	투쟁 및 시민홍보비	16,800,000	5,309,918	63.21%
			국민의국회운동	8,000,000	5,499,620	68.75%
			방송차 운영비	10,000,000	10,030,360	100.30%
		여성정치발전비	여성정치발전비	-	-	-
	조직활동비 소계			74,020,000	36,705,685	99.18%
	선거지원금			151,509,200	93,317,687	61.59%
	예비비				45,000	0.43%
차입금 상환			30,000,000	25,000,000	83.3%	
지출총계			476,549,200	253,224,261	94.1%	
총잔액				111,234,655		

※ 2020년 상반기 결산 해설

- ① 집행율 : 6개월 집행에 대한 비율이므로 2020년 가예산안의 절반에 대한 집행율을 계산함 (국민의국회운동, 방송차운영비는 상반기 특별예산의 성격이므로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율을 계산함)
- ② 당비수입 : 1~4월 당비 배분을 3:7, 5~6월 당비 배분을 4.5:5.5 (당원 증가로 당비 수입이 잠시 늘었으나 당비 배분을 조정으로 인해 종전과 거의 동일한 교부금 내려오고 있음)
- ③ 기타수입 : 특별당비 + 중앙당후원회 모금분 + 경장보조금 월 16만원 (6월 기타수입에 대표단후보 합동유세 지원금 70만원 포함됨)
- ④ 차입금 : 2018년 2,250만원 + 2019년 5,750만원 - 2020년 2,500만원 상환 = 현재 잔여 차입금 5,500만원
- ⑤ 통신비 : 문자발송비용 1월 70만원, 2월 30만원, 3월 20만원, 5월 40만원, 6월 30만원 (상반기 총 170만원)
- ⑥ 비품및소모품비 : 2월 사무용컴퓨터(4대) 74만원, 조기제작 46만원 3월 이동식앰프(2대) 130만원, 발전기(1대) 66만원 등 비품구입에 예산 소요됨
- ⑦ 조직사업비 : 1월 조직사업비 중 임시대의원대회 이동 및 준비비용으로 213만원 소요됨 / 6월 조직사업비 중 당직선거공보 우편발송비(47만원), 당직선거공보 인쇄비(55만원), 대표단후보 합동유세비용(129만원 지출, 70만원 지원 받음) 등 당직선거 관련 비용 소요됨
- ⑧ 상반기 결산 중 총선 관련 수입 지출 내역

수입	특별당비		36,700,000
	중앙당후원회	19년	140,625,198
		20년	86,715,040
수입총계			264,040,238
지출	국민의국회(선전비)		5,499,620
	국민의국회(홍보차량)		10,030,360
	선거지원금(3개선본)		107,550,000
	선거지원금 반환		- 14,232,313
지출총계			108,847,667
수입-지출			155,192,571

심 의 · 의 결

3

2020년 하반기 사업계획 의결의 건

☞ 안건 주문 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2020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해주시시오.

1기 진보당 부산시당 2020년 하반기 사업계획

진보당 1기 종합사업계획(목표, 기조, 방향)이 9.27 2차 중앙위원회에 제출됩니다. 3기 당직선거를 맞이하며 부산시당은 우리당의 가장 장점인 당원들의 힘을 최대치로 발휘하여 집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단결과 혁신'이라는 기치아래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으로 모습을 갖추어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따라서, 목표와 사업흐름을 독자적으로 다 제출하기 보다는 이미 결정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운동과 자체 준비를 다그쳐야 할 2022년 지방선거 준비사업, 그리고 본연의 사업인 당조직강화 영역인 분회확대 강화사업과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하반기계획을 제출드립니다.

■ 목표

1. 지역집권전략, 현장정치역량 강화에 복무하는 지도체계 혁신안을 마련한다.
2. 분회사업의 체계화-제도화, 본보기 분회 창조, 새분회 00개 건설로 분회전성시대로 가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한다.
3.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운동을 비롯한 직접정치 대중운동을 통해 '간부-분회-대중'의 활동 체계를 마련하고 당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한다.
4. 2022 필승전략을 빠르게 수립하여 후보중심의 선거투쟁체계로 돌입한다.

■ 과제와 방도

목표1. 지역집권전략, 현장정치역량 강화에 복무하는 지도체계 혁신안을 마련한다.

2기 부산시당은 당의 골간체계인 중앙당-시당-지역위-분회를 기본으로 당원편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위원회 운영위, 분회장 회의 등 지역위원회 조직생활이 강화되고 당원총회 등 사업이 전개되면서 지역집권 전략에 대한 이해와 요구, 계급계층 당원들의 당중심성이 보다 향상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급계층 현장에서 당조직 건설, 강화사업이 공동화되었습니다. 이는 지도체계편성이 지역위원회의 지도 역량에 대한 엄밀한 타산과 '현장정치역량 강화 전략'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부족한 채 진행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후 2019년 노동자민중당 보궐선거를 전후로 역량축성기에 걸맞게 '현장정치역량 강화' 사업을 계급계층을 기본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민중당, 여성엄마민중당 등 계급계층조직의 지휘역량이 강화되었으며 현장당조직 건설, 강화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기 진보당 부산시당에는 계급계층별 원심력, 체계운영에서의 중복 등을 극복하고 씨줄, 날줄 운동의 진면목을 창조해야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① 부산시당 조직체계혁신안 마련 : 별첨

② 부산시당 위원장단 회의 신설 : 기존의 상임위원회를 위원장단 회의와 사무처로 구분하고 위원장단 회의가 명실상부한 당의 최고 지도(집행)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함. 당의 사상사업과 조직사업, 연대운동과 대중단체 활동, 전반 대중투쟁을 총괄하고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선합니다.

목표2. 분회사업의 체계화-제도화, 본보기 분회 창조, 42개 새분회 건설로 분회전성시대로 가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한다.

2년여간의 당분회 강화운동을 통해 당생활거점, 당정책 관철의 기수, 대중속에 뿌리박은 말단신경이라는 지위와 역할에 맞게 분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강고함과 집단주의 정신이 깃든 조직생활을 통해 정규적인 당정책 토론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성과적입니다. 특히, 2019년 4월부터 진행된 당 강령 제정운동을 시작으로 당의 이념과 노선이 분회생활의 기준점으로 자리잡아나가고 있으며 풍산재벌특혜 청산 투쟁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까지 분회가 당정책 관철의 기본단위로 안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민중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현장당분회를 창조투쟁을 통해 2기 초기 29개였던 현장 분회가 43개로 늘어나고 분회원은 155명에서 2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큰 전진은, 당분회 활동을 통해 각계 각층 대중조직 속에서 당강화사업을 민중집권의 전략적 문제로 대하는 당중심 운동 노선이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비분회장 발굴 육성사업과 분회장에 대한 교육사업, 분회교육이 개별 간부들의 역량에 맡겨져 있는 점은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분회원이라면 그 누구라도 분회장을 결심할 수 있도록 분회운영이 매뉴얼화 되고, 분회장 및 예비분회장에 대한 일상적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당조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회가 자기대중, 자기대중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다보니 당정책 관철에서 몇몇 활동 분회원이 무작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활동에 힘을 쓰는 데 그치고 있는 점 또한 개선, 극복해야 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전략수립과 직접정치운동 실천과정을 통해 말단신경조직답게 분회를 질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분회강화사업의 주체와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진단에 기초하여 당원교육, 분회조직 사업, 간부양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짜들어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현재 당조직이 분회건설기에 있는만큼 따라배울 모범을 만들어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① 분회강화사업 진행방도

■ **본보기분회 발굴 사업** : 기준이 되는 분회를 발굴하여 이후 일반화하는 데에 활용함

㉠ **본보기분회의 기준**:

- ‘간부-분회-대중(조직)’의 형태를 완성하는 분회
- 직접정치운동을 분회가 집단적으로 펼치는 분회

㉡ **사업진행과정**:

- 8월초순: 본보기분회 및 간부주체 설정
 - 노동- 현장위, 주요현장별 1개씩
 - 여성- 1~2개, 대중조직이 있는 단위중심으로 1개씩
 - 청년- 1~2개
 - 지역위- 남구 2개, 각 지역위별 1개씩 선정
- 8월말~: 계급계층조직운영위, 지역위원장회의에서 취합 및 토론하고, 최종 발굴 책임단위 및 지도안 마련은 위원장단에서 책임지는 구조로 한다.

■ **분회사업 보고 기풍 확립**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분회보고서 쓰는 날’

진보당부산시당 위원회 분회

분회모임 일시장소	작성자
참가자(전체분회원 ____명)	
분회원 근황	
분회모임 사전준비	
분회모임 주요 내용 (교육, 토론, 결과)	
이 달의 활동(참가자 포함)	
요청사항(시당, 지역위원회 등)	
차기모임	

■ **전담부서(조직국) 운영** : 매월 운영위원회에 조직진단 보고서, 모범분회 탐사 보고서 제출

■ **전담부서(교육위원회) 운영** : 분회장 교육, 분회교육 통일 교안 제출 - *교육위원회 계획서 참조*

② 분회장 교양 및 단련 체계 운영

■ 부산시당 분회장대회 운영

㉠ 상과 의의: 분기별 당정책관철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공유하는 장, 분회의 모범과 사례를 공유하는 장

㉡ 정례화: 1월, 5월, 8월, 11월 네 번째 일요일 오후2시

- 2020년 분회장대회: 8월23일(일), 11월22일(일)

- 2021년 분회장대회: 1월24일(일), 5월23일(일), 8월22일(일), 11월28일(일)

■ 부산시당 신입분회장대회

㉠ 의의: 분회확대의 총괄지점 및 분회장 준비의 장

㉡ 일시: 10월경 1회, 2021년 1월둘째주경 1회

■ 조직별 분회장 단련체계 운영

㉠ 지역위원장단(지역유별 분회장회의) 회의: 매월 첫번째 일요일 18시-21시

9/6(일), 10/11(일)- 추석연휴로 1주 순연, 11/1(일), 12/6(일)

㉡ 노동분회장 대회: 매월 월1회 13시~19시

7/26(일) 9/13(일), 10/11(일), 11/8(일), 12/13(일) - 7월은 시당대의원 대회로 같음

㉢ 여성 분회장모임: 1차 8/22(토) - 주기와 차기는 미정

목표3.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운동을 비롯한 직접정치 대중운동을 통해 '간부-분회-대중'의 활동체계를 마련하고 당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한다.

지난 시기를 거치며 직접정치운동을 해나갈 지향과 체력이 마련되었다면 이제 운동의 전면화로 직접정치 운동이 우리 당의 확고한 정치방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직접정치운동을 전면화하기 위해서는 [간부-당분회-대중조직]의 모델을 반드시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분회가 대중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현장 대중의 생활문제에서부터 중앙 정치 의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대중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운동은 전당적 단결을 실현하고 당의 인지도와 대중적 기반 제고하는데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운동을 시작으로 직접정치 활동체계를 마련하고 애민의 당, 직접정치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갑시다.

① 분회재편사업

- 직접정치 대중운동과 대중조직 건설을 책임질 수 있는 분회로 전면 재편
 - ㉠ 2022년 필승전략 수립과 연동하여 계획 수립
 - ㉡ 지역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총괄 및 집행점검

②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운동

- 의의
 - ㉠ 전당의 일치된 행보로 단결력을 높인다.
 - ㉡ 전 지역위·현장위 등 모든 당부가 움직여 당의 인지도를 높인다.
 - ㉢ 당사자 조직운동을 통해 당의 조직적 기반을 확대한다.

- 사업기획단 구성
 - ㉠ 구성안: 부산시당 사무처장, 노동자당 사무처장, 부경서비스연맹 1인
 - ㉡ 8.15이후 8.21경부터 활동개시해 나갈수 있도록 준비 진행

- 부산시당 운동흐름
 - ㉠ 8월중하순: 운동본부 발족
 - ㉡ 8월중순~9월중순:
 - 전분회 교양
 - 지역현장위원회 당원참가목표 정하기(8.21이후로 실천시작)
 - ㉢ 9월중순경: 부산시당 입법설명회
 -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운동의 중간지점
 - 해당 조직대상 당사자들 핵심주체분들 발굴 및 참여

-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앙당 계획요약
 - ㉠ 목표:
 - 문재인 정부의 선별적·단계적 방식의 한계성을 뛰어넘은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기조로 당을 알리는 것
 - 14개 특고노동자, 배제된 노동자, 자영업자 등 당사자운동이 되어 당역량화로 귀결될 수 있게 함
 - ㉡ 흐름: 정부의 입법예고(7.8~7.28) → 국회 개정안 제출(9월)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연말) 흐름에 맞춰 대응

③ 기타 하반기 직접정치 대중운동 (추후 논의를 통해 제출)

목표4. 2022 필승전략을 빠르게 수립하여 후보중심의 선거투쟁체계로 돌입한다.

지난 총선에서의 1% 득표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은 결과에 낙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 선거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기 전반의 활동을 통해 민중의 이익을 기준으로 민중의 열의와 열정으로 고충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당의 활동방식에 커다란 긍지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력으로 3%돌파! 그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지방선거까지 우리는 지난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와 교훈에 바탕하여 더 과감한 혁신투쟁을 벌여 우리의 길이 정당함을 실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기 진보당 부산시당 1기의 핵심목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급 조직은 빠르게 2022년 필승전략을 수립하고 후보중심의 선거투쟁체계로 돌입해 나가야 합니다.

■ 2022필승전략

- ㉠ 주무단위 : 지역위원장단 회의, 지역집권전략 수립 및 수행정도 총괄
- ㉡ 후보발굴 및 담보 : 8월말까지 1차 후보발굴 완료, 9월부터 후보자학교 진행

■ 부산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 ㉠ 의의: 1기 진보당 부산시당 출범을 알리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장
- ㉡ 일시장소: 7월26일(일) 오후2시 / 온라인화상회의 (권역별 집결)

부록)

언론홍보국(안)

“메시지 사업으로 2022년 승리를 준비하자.”

1. 사업 방향

- 정당의 언론·홍보 사업은 당원, 지지자를 비롯한 시민들에 대한 메시지 사업이어야 한다. 실무, 단기성 아이디어 사업을 넘어 대상자들과 지속적이며 확장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2. 세부목표

- 온라인판 면대면 만남. 당원 4890명과의 온라인 카톡 사업(단체발송 아님)으로 진보당 부산시당의 입장과 소식을 전하고 확장하자.

※이 사업의 핵심은 지속적인 소통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답장받고 반영하는 것임.

※1차 당원을 시작으로 지지자 확장하고, 지역 및 계급계층별로 전달내용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킴.

3. 집행 계획

1) 전 당원 카톡 사업

- 1시기 : 부산시당위원장 개인 카톡으로 현안에 대한 입장, 시당 소식 등을 문자와 영상링크 첨부글을 통해 홍보국에서 2주 1회 발송한다.

※1차로 진보당 1기 인사와 소식을 전함

- 2시기 : 1시기 메시지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지역위원장,계급계층조직 명의의 카톡발송사업을 정례화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2) SNS현황 및 언론·홍보 기본 체계정비

○SNS현황 : 텔레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 전반 전달력이 미비한 상태. 당원 카톡사업을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1차로 당원들에게 전달되는지 2차로

지지자로 확장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장시킴. 이것을 우선하며 다양한 시도들을 모색.

- 진보당 부산시당 SNS명을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부산시의 경우 유튜브 채널명을 B공식 채널, 부산뉴스로 사용하여 구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시도가 있음)

○언론 : 기자회견(보도자료), 성명, 논평

- 시의성 있게 언론사업 진행하며 네이버 블로그를 보도자료를 축적하는 중심으로 개편 운영. (기자들에게 문자발송 시 네이버 보도자료 링크를 첨부해 보내고 있음)

○선전 : 당보 배포, 현수막 게시

- 현안에 맞게 요구되는 대로 준비하고 집행

○홍보 : 웹 포스터, 영상 홍보물

- 웹 포스터 제작의 경우 요구 되는대로 신속히 제작을 기본으로 함.
- 영상 홍보물의 경우 2분 이내 분량의 “진보당 소식”을 시작으로 조직화 사업에 도움이 되거나 조직화 사업의 성과를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확장함.

○선전 역량강화와 교육

- ‘진보당 소식’영상 제작팀을 구성하여 당 사업에 대한 이해, 제작 편집을 완결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 이들을 주체로 지역, 부문 선전역량 발굴과 교육 등을 기획 집행한다.

※ 메시지사업의 의의

기존 온라인 사업의 돌아보며 번뜩이는 콘텐츠나 아이디어만으로 지속적이거나 확대되는 영향력을 가지기도 어렵고, 성과점을 통계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했다. 우리당의 SNS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들이는 노력에 비해 성과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의국회운동을 통해 면대면 만남의 성과를 경험했다. 메시지 사업은 온라인상의 면대면 사업이어야한다. 구체적이어야하며 소통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 기존의 명단관리와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지역 집권전략의 구체적인 온라인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 사업이 축적되는 방향으로 2022년을 맞이해야 지역에서 노동현장에서 우리의 입장과 소식을 일상적으로 대화 나누듯 전달하며 상호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당 교육위원회 하반기 계획(안)

1. 분회장 교육

- 8월부터 12월까지 총 다섯차례 교안 제출(전 달 말에 제출)
- 내용 : 당강령/직접정치운동/분회운영
- 방향 : 알기 위한 공부보다 실천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연구 중심의 공부
- 분회장 교육 주체 : 지역위 및 현장위원장
- 커리큘럼

8월	민족자주시대를 열어가는 자주의 당 - 코로나19와 북미정세를 통해 미국패권의 몰락을 예측하고 이를 주동적으로 열어가자.
9월	민중의 직접정치정당 - 울산북구 핵쓰레기장 설치 반대 주민투표운동연구
10월	분회원이 성장하는 분회운영론
11월	민중주권시대를 열어가는 평등의 당 - 한국식 기형적 불평등의 심화연구
12월	항구적평화시대를 열어가는 통일의 당

2. 분회교육

- 형식 : 분회모임 중에 한 꼭지로 진행하는 교육 (5분영상으로 제출예정)
- 내용 : 해당 시기 사업과 투쟁, 혹은 제기되는 당면한 과제를 중심을 주제로 선정.
- 방식 : 매일 제출하는 분회운영 안내서 포함. (분회운영안내서는 시당 조직국과 함께 협업해 제작)

3. 분회원교육

- 형식 : 별도의 교육모임. 월 1회
- 내용 : 당강령교육을 기본으로
- 방식 : 요구를 중심으로 신청자를 받아 진행. 본본기로 해당지역위와 함께 9,10월 진행해 가면서 이후 확산해감

4. 진보당부산시당 분회대항 퀴즈대회

- 시기 : 2021년 상반기
- 교재 : 미정. 추후제출

5. 신입분회장학교

- 시기 : 1차-10월, 2차-21년1월,
- 내용 : 당강령교육/분회의 위상과 역할/분회장의 임무 등
- 형식 : 추후 제출

진보당 부산여성-엄마당 하반기 사업계획(안)

1. 기본현황

- 당원 : 222명 (당권자 : 184명)
- 분회 및 분회원 : 15개, 84명
- 간부 현황 : 위원장 윤서영, 부위원장 김재민, 집행위원장 조영은, 조직위원장 박오숙

2. 하반기 목표

- (1) 여성직접정치 대중운동 정형을 창조한다.
- (2) 분회를 강화하고 간부-분회-대중의 활동체계를 마련한다.
- (3) 2022 지방선거 전략을 수립하여 선거투쟁체계로 돌입한다.

3. 영역별 과제와 실현방도

(1) 조직운영체계

회의명	참가성원	회의주기
운영위(13)	동래, 연제, 부산진, 사하, 사상, 북구, 보육현장위(준), 여성현장위(준), 학부모현장위(준) 윤서영(장)김재민(부)박오숙(조직)조영은(사무)	매월 두번째 토 10:00(7.8월제외/7.22)
상임위+집행위(4)	윤서영(위원장), 조영은(집행위원장), 김재민(부위원장), 박오숙(조직위원장)	매주 금 14:00

(2) 2022년 준비사업

- ㉠ 온천동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집권 전략 수립
- ㉡ 8월 말까지 여성-엄마당 후보 발굴 완료
- ㉢ 각 지역 여성위원회(준) 여성정치역량 강화 방안 수립

(3) 당내부사업

㉠당원교육사업(분회,분회장)

- 여성분회장모임
 - 월1회 정례화 8월22일, 9월19일, 10월24일, 11월21일, 12월 19일
 - 정치운동하는 분회, 자기 대중이 있는 분회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연구중심

- 신입당원 교육 : 여성-엄마당 내 교육 역량을 마련하고 자체로 진행

㉠분회강화사업

- 모범 분회 창조 사업 : 2개 분회 선정, 핵심간부의 지도 집중
- 새분회 건설 : 22개로 확대
- 선명한 분회 목표와 역할 설정
 - 신규분회 : 분회의 목표, 정치활동 토론, 분회결성선언문 작성
 - 기존분회 : 분회장모임에서 분회의 지위와 역할 교양, 8-9월까지 분회의 목표, 정치활동 토론, 분회결성 선언문 작성

(4) 당외부사업

㉡대중조직화사업(대중단체건설강화, 입당)

- 여성안전마을 사업 : 여성들이 바라는 안전한 마을에 대한 정치적 요구 발굴, 연말 여성직접정치대회 개최

■ 보육현장위

보육노동자 존중 운동 : 보육교사 당원들이 설문조사, 간담회를 통해 보육교사 노동권과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서 여론화한다. 이후 실질적 현장변화를 만들어내는 투쟁 계획

㉢대중투쟁

- 성폭력, 성차별에 맞서 즉각 대응하는 투쟁 마련

4. 하반기 일정

8월12일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 기림일 수요시위

8월22일 여성분회장모임

8월26일 여성-엄마당전국임시회의

9월19일 여성분회장모임

10월24일 여성분회장모임

10월28일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 기림일 수요시위(주최 진보당부산시당)

11월21일 여성분회장모임

12월19일 여성분회장모임

진보당 부산노동자당 하반기 사업계획(안)

1. 기본현황(6.30 현재)

(1) 당원 현황

- 3562명(당비인출 2258명)

(2) 현장위현황

- 건설 현장위
- 지하철 현장위
- 학비 현장위
- 마트 현장위
- 택배 현장위(준)
- 공공연대 현장위(준)
- 철도 현장위(준)
- 운송 현장위(준)

(3) 분회현황

- 34개 분회(197명 분회원)

2. 목표

- 현장위 3개 신규결성
- 현장분회 11개 신규결성
- 현장직접정치 실현과 분회강화 전면화
- 2022년 지방선거 노동전략후보 1차 선정 및 계획수립

3. 과제와 방도

(1) 현장위 3개 신규결성

- 택배, 철도, 운송단위에 현장위 건설

(2) 현장분회 11개 신규결성

- 건설 4개, 학비 1개, 지하철 1개, 택배(준) 1개, 공공연대(준) 1개, 직할 및 기타 3개

(3) 현장직접정치 실현과 분회강화 전면화

- 모범창조 시범연구 분회를 현장위와 현장위(준)별 1개 결의. 시당과 부산노동자당 그리고 현장위와의 집체적 집중 연구.창조사업
- 사례발표와 연구를 중심으로 노동분회장 대회 매달진행

○ 현장당원들의 당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부산노동자당 당보발행

(4) 2022년 지방선거 노동전략후보 1차 선정 및 계획수립

○ 7,8월 부산노동자당 운영위에서 집중토론 후 1차 노동전략지역과 후보선정

○ 지역위 속에서 현장분회가 지방선거 당선에 복무하기 위한 주체선정. 계획수립

4. 하반기 일정

(1) 노동분회장 대회

○ 9/13(일), 10/11(일), 11/8(일), 12/13(일)

(2) 부산노동자당 당보 발행일

○ 9/2(수), 11/3(수)

부산청년진보당 하반기 사업계획(안)

<부산청년진보당 2022년까지의 계획>

1시기. 2020 하반기 청년직접정치운동 계획

① <직접정치운동 전면화>의 1시기 : 청년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1. 청년학생 속에 깊이 들어가 관계를 맺고 당원들 내에 청년학생들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는 시기.
2. 청년학생들의 고충 속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할 건강한 대중을 조직하는 시기.
3. 향후 건설될 청년직접정치조직의 씨앗조직을 마련하는 시기.

② 총적방향

- 분회를 중심으로 청년학생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관계를 쌓는 당원들로 거듭나자.
- 청년학생들의 고충을 그들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례를 창출하자.

③ 목표

1) 청년학생 고충해결운동을 통한 직접정치 씨앗조직 만들기.

씨앗조직이란, 직접정치운동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는 직접정치 본조직 결성을 준비하는 모임을 뜻합니다. 작은 성과를 바탕으로 씨앗조직을 결성 후 씨앗조직을 주체로 하여 큰 규모의 직접정치운동을 계획, 집행합니다. 그 성과로 직접정치 운동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청년학생직접정치 본조직을 결성할 계획입니다.

2) 모든 분회가 명확한 자기 대중에 뿌리내리기. (1분회 1분공)

④ 방도 (핵심사업)

핵심사업 1. 장전1동에 사는 1,000명 원룸거주 청년학생 고충청취.

(1) 취지 : 단순히 설문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청년학생들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목적.

(2) 목표

- 단순히 설문지의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의 삶을 얼마나 깊게 이해, 파악하는가를 중심으로 실천과 조직생활을 운영한다.
- 장전 1동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 1,000명의 지속적인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얻는다.

(3) 형식 : 분회별로 구역을 설정, 그 구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충청취 설문조사 진행

(4) 기간 : 8/23(수) ~ 10/29(목)

* 아래 달력 참조 : 전체 실천은 주 1회 / 부산대 및 집행부 당원들은 추가로 주 1회 더 진행

(5) 체계 : 부산대 당원들을 큰 구역책임자로 하고 분회별로 큰 구역 내 작은 구역을 담당.

(위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두로 설명드립니다.)

핵심사업 2. 당원 54 + 대중 50 = 100명 규모의 고충청취 보고대회 성사

(1) 상

- 추후 고충해결 직접정치 운동의 초동주체와 운동 의제를 마련하는 장.
- 우리 당의 직접정치 운동이 대중에게 실물로 선전홍보 되는 장

(2) 목표

- 직접정치운동의 의제 및 50명의 초동주체 발굴
- 100명 규모의 고충청취 보고대회 성사

(3) 일시 : 10/29(목) 저녁 6시(가안)

핵심사업 3. 고충해결운동

(1) 상

- 고충청취 보고대회에서 선정한 의제를 초동주체들과 함께 해결하는 운동.

(2) 목표

- 고충해결운동을 통해 청년대중에게 복무하는 당으로써 체질을 바꾸자.
- 민원해결이 아니라 청년대중들의 힘으로 고충을 해결하는 청년직접정치운동의 씨앗사례를 만들자.

(3) 방식

- 고충해결주체단위를 정확히 세우자.
- 고충과 해결과정이 바로바로 청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신속한 선전사업을 함께 진행.
- 민원해결이 아니라 직접정치운동방식으로 해결 연구

핵심사업 4. 2020 장전동 청년 송년회

(1) 상

- 직접정치운동의 조직적 결실 <씨앗조직>을 결성하는 자리
- <고충해결운동>의 성과를 돌려드리는 자리

(2) 목표

- 씨앗조직 건설

						비품및소모품비	비품 구입비	1,200,000	200,000
								소모품·사무용품 구입비	600,000
						각종수수료	각종 수수료	30,000	5,000
						사무소 설치·운영비 소계		13,803,800	2,327,300
						기본경비 합계		131,903,800	21,727,300
기타 수입	중앙당후원회, 이자수입 등	-	-	정 치 활 동 비	조 직 활 동 비	연대사업비	정기분담금	2,340,000	390,000
							특별분담금	900,000	150,000
출장비	출장비	3,000,000	500,000						
위원회 사업비	계급계층조직 사업비	2,280,000	380,000						
	지역사업비	4,350,000	725,000						
조직사업비	회의비	1,680,000	280,000						
	업무추진비	240,000	40,000						
	당원관리	600,000	100,000						
	행사진행비	3,900,000	650,000						
								교육훈련비	600,000
선전비	투쟁 및 대시민홍보비						8,400,000	1,400,000	
						조직활동비 소계		28,290,000	4,715,000
수입 합계		78,000,000	13,000,000			선거지원금	-	-	
						예 비 비	17,040,855	2,840,143	
						차입금 상환	-	-	
						차기 이월금	12,000,000	2,000,000	
잔액 총계 (이월금 + 수입합계)		189,234,655	-			지출 총계	189,234,655	31,282,443	

※ 하반기 예산안 해설

- ① 당비수입을 정기당비와 특별당비로 구분함 (기존 예산안에서 특별당비는 기타수입으로 분류)
- ② 월 정기당비 수입은 약 1,300만원으로 예상되며 (당비 교부금 중앙당:시도당 비율 4.5:5.5) 통상 연말에 모금 해오던 중앙당후원회 모금액은 다음해 상반기에 입금되므로 하반기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움.
- ③ 복리후생비 신설 : 상근자 명절 상여금 연 2회 지급
- ④ 기존 예산안 "공공요금"에 전기수도요금과 신문값, 정수기임대료 등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편성된 것을 성격에 맞게 수도광열비와 사무소 운영비로 세분화 (난방용 유류비는 비품및 소모품비로 지출되고 있던 것을 옮김)
- ⑤ 통신비 각 항목을 세분화함
- ⑥ 비품및소모품비 : 비품구입과 소모품 구입을 구분하고 탕비실 비치용 다과 구입에 소요되던 비용은 사무소 운영비로 이전함
- ⑦ 각종수수료 : 현재 부산은행 우대고객으로 분류되어 이체수수료 발생하지 않지만 잔액이 줄어들면 다시 혜택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 예산에서 절반규모만 편성함 (월 1만원 → 월 5천원)
- ⑧ 연대사업비 : 정기분담금과 특별분담금을 구분하여 연대사업비 지출 추이를 더 원활히 파악하고자 함
- ⑨ 위원회 사업비 : 계급계층조직 사업비와 지역사업비로 구분 (각 단위별 세부 내역은 별도 공유), 상설위원회 사업비는 폐지 (실효성 없음)
- ⑩ 조직사업비 : 기존 조직사업비 지출 추이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함.
 - 회의비 : 분기별 1회 중앙위원회 참가 지원 및 운영위원회 진행경비
 - 업무추진비 : 기자회견 등 외부일정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주차비 등)
 - 당원관리 : 입·탈당서 우편 발송, 영수증 발송, 당원경조사(본인상 등), 당 특보 발송 등 당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행사진행비 : 각종 행사 추진 및 진행 비용
 - 교육훈련비 : 강사비 등
- ⑪ 예비비 : 중앙당 당규 회계관리 기준에 따라 총액의 10% 내외에서 편성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성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함'임.

심 의 · 의 결

5

부산시당 규약 개정의 건

☞ 안건 주문 사항 : 제출된 규약 개정안을 검토한 후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규약 개정안>을 의결 해주십시오.

1. 개정취지

- 1) 당명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당명 표시되는 부분)
- 2) 제정 당시 정돈되지 않았던 오·탈자 교정
- 3) 중앙당의 당헌·당규와 충돌하는 조항 개정 (여성할당 실현,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구성 등)

2. 규약 개정안

원문	개정안
민중당 부산광역시당 규약	진보당 -----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민중당 부산광역시당’으로 한다.	제1조(명칭) ----- 진보당 -----.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민중당 부산광역시당의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 진보당 -----.
제3조(조직) 민중당 부산광역시당은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당을 두고,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둔다. 단, 민중당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거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둘 수 있다.	제3조(조직) 진보당 ----- 구·군 -----, 진보당 ----- 구·군을 -----.
제2장 당원	제2장 당원

<p>② 부산광역시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u>약간</u>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제14조(선거관리위원회)</p> <p>① (생략)</p> <p>② 부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u>약간</u>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부산광역시당 <u>윤리위원회</u> 위원장과 위원은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p> <p>제15조(예산결산위원회)</p> <p>① (생략)</p> <p>② 부산광역시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u>약간</u>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부산광역시당 <u>윤리위원회</u> 위원장과 위원은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p>	<p>② ----- -- 2인-----.</p> <p>③ (원문과 같음)</p> <p>제14조(선거관리위원회)</p> <p>① (원문과 같음)</p> <p>② ----- --- 2인-----.</p> <p>③ ----- <u>선거관리위원회</u> ----- ----- -----.</p> <p>제15조(예산결산위원회)</p> <p>① (원문과 같음)</p> <p>② ----- --- 2인-----.</p> <p>③ ----- <u>예산결산위원회</u> ----- ----- -----.</p>
<p><이하 생략></p>	<p><이하 원문과 같음></p>

첨부

진보당 당규 <제6호> 회의규정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헌 제3장에 따른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본 규정은 당헌이나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적용한다.
- 당내 각종 기구는 자체 의결에 의해서 이 회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당내 각종 기구의 회의규정이 당헌당규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규정은 우선적 기준이 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의장”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회의참가자”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의사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재적1/3이상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적의 총수)

-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 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 사고자의 수는 결혼,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입원, 출산,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성원보고)

-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석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7조(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조(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10조(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1조(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의제**제12조(대의원대회의 의제)**

- ① 대의원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13조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 ② 의장은 정기대의원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개최일 15일 전, 임시대의원대회 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 ③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권리당원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임시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⑤ 의장이 위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은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중앙위원회의 의제)

- ① 중앙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17조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 ② 의장은 중앙위원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를 7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 ③ 중앙위원은 중앙위원 5인 이상 또는 권리당원 1%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

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 당일 안건 발의는 중앙위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위 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앙위원은 회의 시작 전까지 발의할 수 있다.

4장 동의

제14조(동의의 종류) 회의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긴급동의

제15조(수정동의)

-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 ③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6조(의사진행동의)

-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 ②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 반력 : 의결되면 논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번안동의)

- ① 의결이 끝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번안동의는 재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긴급동의)

-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 2.의장불신임 : 의결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부의장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단, 의장단 전원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할 자 전원이 부재할 경우 회의 구성원 중 연장자의 진행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3.긴급동의를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조(안건 철회) 12조 제3항, 제13조 제3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발언**제21조(발언 신청과 허가)**

-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예외로 한다.
- ③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 ④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질의에 응답할 때
 - 2.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 3.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 ③ 중앙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인당 발언회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23조(발언시간의 제한)

- ①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②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시간 제한을 어긴 경우

제6장 안건 토의

제25조(회순)

- 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 ②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조(안건 상정)

- ①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 ②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제27조(제안설명)

- ①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설명을 한다.
- ② 제안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제28조(질의와 토론)

-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29조(축조심의)

- ①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토론 방식)

- ①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②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 ③ 3개 이상의 복수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복수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안-2안-3안... / 2안-3안... 1안 / 3안... 1안-2안
-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 ⑥ 중앙위원회의 경우 의장은 토론자 수를 3인 이내로 할 수 있고, 찬반토론자수를 동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의장, 부의장의 토론 참가)

-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②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7장 의결

제32조(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4조(표결 시작)

-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 ②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제35조(표결방법)

- ① 표결은 실명으로 한다. 다만, 특정인의 선출, 인준, 탄핵,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한다.
- ②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하여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방법을 정한다.

제36조(표결순서)

-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 ②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 ③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7조(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들의 입회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8조(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8장 인터넷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39조(인터넷 생중계)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대표단 또는 의장단의 결정으로 이를 생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40조(의사록 및 회의결과)

- ① 의사록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결 상황 : 재적자 수와 명단, 사고자 수와 명단, 참석자 수와 명단, 불참자 수와 명단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4. 회순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6.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가 포함된 회의결과
 7. 회의 녹취록
- ②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③ ‘회의결과’라 함은 제1항의 7호 ‘회의 녹취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 ④ 당헌에서 규정한 전 기관은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41조(의사록의 작성과 보관)

-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 ② 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 ③ 의장은 대회 후 10일 이내에 의사록 작성을 완료한다.
- ④ 의장은 의사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에서 한다.

제42조(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공개)

- ① 의장은 10일 이내에 의사록을 확인 및 서명하고, 3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② 각 회의결과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③ 각 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3조(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정정)

-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사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 ② 각 회의 참가자는 회의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의사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을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④ 회의결과가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질서

제44조(의장의 질서유지)

-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감찰을 지명한다. 감찰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 ② 의장은 회의참가자가 회의 중에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1.주의: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 2.경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진행을 방해할 때.
 - 3.발언 취소와 사과: 다른 회의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조직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 4.퇴장: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첨부

진보당 부산시당 규약 [제정 2017.11.0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민중당 부산광역시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민중당 부산광역시당의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민중당 부산광역시당은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당을 두고,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둔다. 단, 민중당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거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적)

- ①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계급계층조직과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 ② 당원의 소속 계급계층조직은 계급계층을 기준으로 하나의 계급계층조직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나의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당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 학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역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 ④ 위 ①항에 해당하는 계급계층조직과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 부산광역시당에 직접 소속한다.
- ⑤ 당원은 당의 기초조직이자 생활과 활동의 공동체인 분회에 참여한다.

제5조(여성당원과 장애인당원의 권리)

-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출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 ②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출직에 장애인 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6조(대의원대회)

- ① 부산광역시당 대의원대회는 최고 대의기관이며 다음의 같이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당 소속 중앙당 대의원
 2. 선출직 부산시당 대의원
- ② 부산광역시당 대의원은 권리당원 20명당 1명으로 총수를 정한다.
- ③ 선출직 대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분회장 50%, 일반당원 50%
 2. 선출직 대의원의 총수에서 분회장규모 50%가 안될 경우, 일반당원의 비율을 늘릴 수 있고.
 3. 선출직 대의원 총수대비 분회장규모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역 및 계급계층별로 선 배정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서는 분회장 중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 ④ 부산광역시당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1. 부산광역시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부산광역시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부산광역시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4. 부산광역시당의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위원 선출
 5. 부산광역시당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⑤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되며,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부산광역시당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의1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0일내에 즉시 소집해야 한다.
- ⑥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 ①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당 대의원대회 다음의 대의기관이며 다음의 같이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대표
 2. 지역위원장
 3.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3. 계급계층조직의 현장조직 대표

②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1.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 발의
3. 지역위원회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 판정과 직무대행 선임
4. 위원장단에서 제출한 안건 의결
5. 규칙의 제정과 개정
6. 부산광역시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단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즉시 소집해야한다.

④ 기타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당의 당규에 따른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위원장단

제8조(지위와 구성)

① 위원장단은 부산광역시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위원장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산시당의 계급계층조직 대표
3. 일반 부위원장 약간명

③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당의 최고책임자로 부산광역시당을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결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선출 및 임기)

①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당 소속 권리당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 미달시 다득표자 2인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부산광역시당의 계급계층조직 대표는 부산광역시당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며 계급계층조직 소속 권리당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 미달시 다득표자 2인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일반 부위원장은

계급계층조직에 속하지 않는 권리당원 과반수 참여와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절 상임위원회

제10조(지위와 구성)

① 상임위원회는 제반 당무를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집행기관이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단, 사무처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중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운영위원회를 보좌하며, 기타 일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및 집행을 한다.

제3절 사무처

제11조(지위와 구성)

① 부산광역시당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사무처장
2. 국장과 부장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고, 사무처의 국장과 부장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4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상설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활동기간을 명시하여 위원장단에서 정하고, 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장단에서 인준한다.

제5장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제13조(윤리위원회)

-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부산광역시당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부산광역시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부산광역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부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부산광역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예산결산위원회)

-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결산과 업무를 심의·감사하는 기관으로 부산광역시당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 부산광역시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부산광역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6장 고문단, 지도위원

제16조(고문단, 지도위원)

-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 및 지도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고문 및 지도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 공직자 회의 및 공직 특별당비

제16조(공직자회의)

- ① 선출직 공직자로 공직자 회의를 구성한다.

- ② 공직자 회의는 운영위원회 방침에 따라 공직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③ 공직자회의를 통해 지방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 ④ 위원장단은 공직자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한다.

제17조(공직특별당비)

- ①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보좌관은 중앙당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보좌관은 부산광역시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한다.
- ② 선출직 공직자 및 보좌관은 당무위원회가 정한 공직특별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무위원회가 정하기 전이라도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가 공직자 특별당비를 정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제18조(구성)

- ① 당 재정은 당비중 교부금, 특별당비,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 ②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19조(예산과 결산)

-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 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 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부산광역시당의 규약 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청산)

-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시(도)당의 재산과 부채는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관에서 청산한다.
- ② 청산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22조(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시(도)당 위원장의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규약 적용 및 해석) 이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중앙당 당헌, 당규에 따르며, 이 규약의 해석은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있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2017년 11월 6일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사고지역위원회의 공직후보 선출 등)

사고 지역위원회 및 미구성 지역위원회의 공직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대의원대회 권한에 관한 특례)

이 규약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전까지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대회의 권한을 갖는다.

제4조(경과규정) 2018년 지방선거 이후 3개월 이내에 동시당직선거를 진행한다. 그 전까지는 각종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은 중앙당 ‘과도기 운영방안’에 따른다.

[첨부_1]

진보당 부산시당 1기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의사록

일시 : 2020년 7월 26일 (일) 14:00

장소 : 권역별 원격화상회의

회의 진행자 : 의장 (부산시당 위원장 노정현)

기록자 : 박소연

시각	회순	주요논의 및 결정사항	비고(발언자, 특이사항 등)	질의 및 토론
14:00	성원확인	거점별 출석현황 보고 취합, 각 대의원 돌아가며 인사	연제, 중영도 연결 지연(확인14:15)	
14:10	축사	축사 :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김재하 (영상으로 진행)		
14:15	개회선언	성원보고 - 회의성원 총 수 155명, 사고자 (0)명, 재적자 (155)명, 의사정족수 (78)명, 재석자수 (104)명으로 성원으로 보고 함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함	
14:17	서기,감찰,검표 위원 및 대표위원 지명	서기 홍기호, 신성호, 박소연 감찰 신창주, 한혜경, 박명진, 이기윤, 조영은, 김철휘, 조차리, 김경락, 김준수, 김병국, 김민정, 김태성, 손수진	의장이 지명하고 재석 대의원(105명) 만장일치 동의로 서기, 감찰(검표위원 및 대표위원 겸임)을 지명함.	

시각	회순	주요논의 및 결정사항	비고(발언자, 특이사항 등)	질의 및 토론
14:19	회순 확정	제출된 회순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확정함	의장이 회순을 제안하고 재석 대의원(105명) 만장일치 동의로 회순을 확정함	
14:20	안건심의	확정된 회순에 따라 보고안건과 심의·의결 안건을 차례로 상정함을 알림		
14:20	보고안건	회순에 따라 보고안건을 심의함	사무처장이 보고안건을 해설함.	
14:24	심의·의결안건 ①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구성 의 건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의 추천안을 검토하고 제출된 대로 각 직속기관의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함.	재석 대의원(113명) 만장일치 동의로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필숙, 위원 김미진·이석재)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손인곤, 위원 여승철·박영애) /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유병국, 위원 박진영·임미진)을 선출함.	
14:30	심의·의결안건 ②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결산 심의의 건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의 회계결산내역과 예산결산위원회의 보고서를 승인함.	사무국장이 회계결산내역과 예산결산위원회 보고서를 보고함 2020년 상반기 결산안의 집행률 수정 요청이 있었고 반영하기로 함. 그 외 재석대의원(112명) 만장일치동의로 제출된 결산내역과 보고서를 승인함.	147번대의원 서구동구 이승현 질문 : 25페이지- 집행률 숫자가 전체적으로 맞지않는것 같다. 예산안과 상반기 집행액을 계산하면 제출된 집행률이 나오지 않는다. 수정바란다. 의장 답변 :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은 1년치, 집행률은 6개월(예산안의 절반)에 대한 집행률이라 언뜻 이해하기

시각	회순	주요논의 및 결정사항	비고(발언자, 특이사항 등)	질의 및 토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영 하겠다고 답변함. 또한 지도부 선거가 매번 1년의 중반에 치러지다보니 새 지도부 임기가 여름에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함. 원래는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라 이렇게 상반기 결산만 제출하는것이 안맞기는 하지만 올해는 총선도 있었고 지도부가 교체되기도 해서 이렇게 상반기 결산을 제출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보기 편하게 수정하겠다고 답변.
14:45 (15:08 정회, 15:20 속개)	심의·의결안건 ③ 2020년 하반기 사업계획 의결의 건	2020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의결함.	사무처장이 부산시당 사업계획을 발제함 각 계급계층조직 위원장이 계급계층 사업계획을 발제함 재석대의원(114명) 만장일치 동의로 제출된 하반기 사업계획을 의결함	의장발언 : 계획서에 투쟁계획이 빠져 있다. 세균전부대투쟁 당이 어떻게 나아갈것이나 남구수영구지역위 계획은 있지만 시당차원은 미비, 올해가 끝이 아닌 내년 내후년까지의 중장기적 계획 필요하기에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 내년 시장보궐선거가 있다. 당원들의 열렬한 소망이 있었지만 평가기간이었기 때문에 논의가 이르다고 생각함. 하지만 9월에는 종합계획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에서는 위원장단부터

시각	회순	주요논의 및 결정사항	비고(발언자, 특이사항 등)	질의 및 토론
				<p>논의 시작하려고 함. 출마부터 출마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나아갈 것인가 등,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보궐선거의 중요한 위치, 그러므로 앞으로 보충될 것. 장애인위원회의 건설,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현재 시당사무실의 계단이 다들 힘들다는 의견접수. 당사무실 이전 또한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사정상 힘든 부분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사무실이전은 해내겠다. 장애인동지들과 함께 지난 시기를 평가하고 당차원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논의할 워크샵예정</p> <p>부산시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풍산 등, 시정에 개입하기 위한 조직구상 중.</p> <p>남구수영구 김은진 - 우리는 지금 내년 전면전을 앞두고 지금부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 남구의 모든주민들이 투쟁의 주인으로 나서서 해</p>

시각	회순	주요논의 및 결정사항	비고(발언자, 특이사항 등)	질의 및 토론
				결하고 자주적으로 당당하게 서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시당의 모든 투쟁에 앞장서겠다. 부산진구 김철휘 - 진보당 1기, 위원회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
15:54	심의·의결안건 ④ 2020년 하반기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2020년 하반기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함.	사무국장이 하반기 예산안을 보고함. 재석대의원(113명) 만장일치 동의로 제출된 예산안을 승인함.	의장발언 : 당원들의 애당심에 기초해서 새로운 재정설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에 맞춰 제출된 예산안이다.
16:02	심의·의결안건 ⑤ 부산광역시당 규약 개정의 건	부산광역시당 규약을 제출된 안대로 개정함.	사무처장이 규약 개정안을 해설함 재석대의원(113명) 만장일치 동의로 규약을 개정함.	
16:05	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		폐회시 재석대의원 113명

[첨부_2]

심의·의결안건 ②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결산 심의의 건 결과에 따른 자료 수정

민중당 부산시당 2020년 상반기 결산 (수정의결안)							
구분	항	목	세목	내역	2020년 상반기 예산(안)	상반기집행액	집행율
수입	전월 이월금			이월금	2,756,426	2,756,426	100.00%
	당비 수입				108,600,000	94,659,713	87.16%
	기타 수입				237,545,198	267,042,777	112.42%
	차입금				—	—	—
	수입 총계				346,145,198	361,702,490	104.49%
지출	기 본 경 비	인 건 비	활동비	상근자 활동비	95,600,000	80,700,000	84.41%
			인건비 소계		95,600,000	80,700,000	84.41%
	사 무 소 설 치 운 영 비	임대료	임대료 및 관리비		7,260,000	7,260,000	100.00%
		복사기임대료	복사기임대사용료		990,000	990,000	100.00%
		통신비	전화, 인터넷, 문자요금		2,100,000	2,335,990	111.24%
		공공요금	전기, 수도 및 기타 요금		1,980,000	1,424,414	71.94%
		비품및소모품비	비품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2,520,000	5,402,385	214.38%
		각종수수료	각종 수수료		60,000	43,100	71.83%

		사무소 설치운영비 소계		14,910,000	17,455,889	117.08%	
		기본경비 합계		110,510,000	98,155,889	88.82%	
	정치활동비	조직활동비	연대사업비	연대사업비	3,900,000	3,335,000	85.51%
			출장비	출장비	3,600,000	2,099,327	58.31%
			위원회 사업비	지역 및 계급계층, 상설위원회 사업비	4,710,000	1,716,960	36.45%
			조직사업비	조직사업비	7,400,000	8,714,500	117.76%
			선전비	투쟁 및 시민홍보비	8,400,000	5,309,918	63.21%
				국민의국회운동	8,000,000	5,499,620	68.75%
				방송차 운영비	10,000,000	10,030,360	100.30%
			여성정치발전비	여성정치발전비	-	-	-
	조직활동비 소계		46,010,000	36,705,685	79.78%		
	선거지원금		151,509,200	93,317,687	61.59%		
	예비비		-	45,000	-		
	차입금 상환		30,000,000	25,000,000	83.3%		
	지출총계		338,029,200	253,224,261	74.91%		
총잔액		-	111,234,655				

[첨부_3]

심의·의결안건 ⑤ 부산광역시당 규약 개정의 건 - 개정 규약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규약

[제정 - 2017.11.06.]

[개정 - 2020.07.2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진보당 부산광역시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진보당 부산광역시당의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진보당 부산광역시당은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당을 두고, 구·군에 지역위원회를 둔다. 단,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근 구·군을 통합하거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적)

- ①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계급계층조직과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 ② 당원의 소속 계급계층조직은 계급계층을 기준으로 하나의 계급계층조직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나의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당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 학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역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 ④ 위 ①항에 해당하는 계급계층조직과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 부산광역시당에 직접 소속한다.
- ⑤ 당원은 당의 기초조직이자 생활과 활동의 공동체인 분회에 참여한다.

제5조(여성당원과 장애인당원의 권리)

-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출직에 여성당원 50% 이상을 할당한다.
- ②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출직에 장애인 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6조(대의원대회)

- ① 부산광역시당 대의원대회는 최고 대의기관이며 다음의 같이 구성한다.
 - 1. 부산광역시당 소속 중앙당 대의원
 - 2. 선출직 부산시당 대의원
- ② 부산광역시당 대의원은 권리당원 20명당 1명으로 총수를 정한다.
- ③ 선출직 대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분회장 50%, 일반당원 50%
 - 2. 선출직 대의원의 총수에서 분회장규모 50%가 안될 경우, 일반당원의 비율을 늘릴 수 있고.
 - 3. 선출직 대의원 총수대비 분회장규모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역 및 계급계층별로 선 배 정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서는 분회장 중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 ④ 부산광역시당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 1. 부산광역시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2. 부산광역시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 3. 부산광역시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 4. 부산광역시당의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위원 선출
 - 5. 부산광역시당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⑤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되며,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부산광역시당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0일내에 즉시 소집해야 한다.
- ⑥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 ①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당 대의원대회 다음의 대의기관이며 다음의 같이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대표
2. 지역위원장
3.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4. 계급계층조직의 현장조직 대표

②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1.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 발의
3. 지역위원회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 판정과 직무대행 선임
4. 위원장단에서 제출한 안건 의결
5. 규칙의 제정과 개정
6. 부산광역시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단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즉시 소집해야한다.

④ 기타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당의 당규에 따른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위원장단

제8조(지위와 구성)

① 위원장단은 부산광역시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위원장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산시당의 계급계층조직 대표
3. 일반 부위원장 약간명

③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당의 최고책임자로 부산광역시당을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결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선출 및 임기)

- ①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당 소속 권리당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 미달시 다득표자 2인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부산광역시당의 계급계층조직 대표는 부산광역시당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며 계급계층조직 소속 권리당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 미달시 다득표자 2인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일반 부위원장은 계급계층조직에 속하지 않는 권리당원 과반수 참여와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절 상임위원회

제10조(지위와 구성)

- ① 상임위원회는 제반 당무를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집행기관이다.
-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단, 사무처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중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운영위원회를 보좌하며, 기타 일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및 집행을 한다.

제3절 사무처

제11조(지위와 구성)

- ① 부산광역시당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사무처장
 2. 국장과 부장
-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고, 사무처의 국장과 부장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4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2조(지위와 구성)

- ①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상설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활동기간을 명시하여 위원장단에서 정하고, 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장단에서 인준한다.

제5장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제13조(윤리위원회)

-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부산광역시당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부산광역시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부산광역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부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부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예산결산위원회)

-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결산과 업무를 심의·감사하는 기관으로 부산광역시당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 부산광역시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부산광역시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6장 고문단, 지도위원

제16조(고문단, 지도위원)

-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 및 지도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고문 및 지도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 공직자 회의 및 공직 특별당비

제16조(공직자회의)

- ① 선출직 공직자로 공직자 회의를 구성한다.
- ② 공직자 회의는 운영위원회 방침에 따라 공직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③ 공직자회의를 통해 지방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 ④ 위원장단은 공직자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한다.

제17조(공직특별당비)

- ①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보좌관은 중앙당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보좌관은 부산광역시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한다.
- ② 선출직 공직자 및 보좌관은 당무위원회가 정한 공직특별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무위원회가 정하기 전이라도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가 공직자 특별당비를 정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제18조(구성)

- ① 당 재정은 당비중 교부금, 특별당비,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 ②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19조(예산과 결산)

-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 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 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부산광역시당의 규약 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청산)

-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시(도)당의 재산과 부채는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관에서 청산한다.
- ② 청산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22조(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시(도)당 위원장의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규약 적용 및 해석) 이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중앙당 당헌, 당규에 따르며, 이 규약의 해석은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있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2017년 11월 6일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사고지역위원회의 공직후보 선출 등)

사고 지역위원회 및 미구성 지역위원회의 공직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대의원대회 권한에 관한 특례)

이 규약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전까지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대회의 권한을 갖는다.

제4조(경과규정) 2018년 지방선거 이후 3개월 이내에 동시당직선거를 진행한다. 그 전까지는 각종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은 중앙당 '과도기 운영방안'에 따른다.